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865

발의연월일: 2025. 4. 16.

발 의 자:임미애·권향엽·문금주

박수현 • 박해철 • 위성곤

이광희 • 이용선 • 이재관

장종태 · 정진욱 · 조계원

최민희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고 있고, 임대사업용 농기계의 종류와 임대료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 은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저렴한 임대료율을 적용해 왔으며, 이에 대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시정 요구를 받아 기준에 맞춰 임대료가 인상 된 사례가 발생함. 이로 인해 농업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.

또한 이번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농업인의 조속한 생업 복귀를 돕기 위해 농기계를 장·단기로 무상 임대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임.

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실

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농업 정책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8조의2제5항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임대료에 대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농업기계 임대사업의	제8조의2(농업기계 임대사업의
촉진) ① ~ ④ (생 략)	촉진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	⑤
류,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	
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	
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	
정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임대료에 대한</u>
	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
	따로 정할 수 있다.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